

2026년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년도에 시행되는 2026년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 동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 국가시험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시험일정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응시수수료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예정일	시험장소
<인터넷접수> 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 방문접수 없음	620,000원	2025. 9. 1.(월) ~ 11. 3.(월) ※ 총 39일간	2025. 11. 28.(금) 11: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센터)

- 시험장 주소 및 교통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잠실대교 북단방향 도보 15분
- 시험기간 및 합격자발표 예정일은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kuksiwon.or.kr)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구분	내용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접수 가능함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www.kuksiwon.or.kr)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000원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간편결제 ■ 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 ■ 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p>※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함</p>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 스캔 시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접수 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상담센터(1544-4244)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 보유자는 응시할 수 없음)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 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본인의 시험일 20일전까지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 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 단,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환불요율 50%)는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환불 관련 문의는 1544-42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다음의 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다만,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2025. 7. 21.(월) ~ 8. 1.(금)

라. 개인별 시험일 안내(응시표 출력) : 2025. 7. 31.(목) 17:00

4 시험방법 등

가. 시험방법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안내에 따라 10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 각 시험실에서 퇴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합니다.

나.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

문항유형	평가내용
종합문항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수기(手技)

다. 출제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출제문제수	배점		시험시간(1문제당)
		1문제당	만점	
종합문항	10문제	100점	1,000점	12분

라. 시험시간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실기시험센터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이클	입장시작	입장완료*	시험시간
1	07:45	08:15	09:00~11:33
2	11:40	12:10	12:55~15:28
3	14:35	15:05	15:50~18:23

* <입장완료> 시간은 응시자가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임

**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사이클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

5

합격자 결정(발표) 및 면허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3] 참조)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2020-121호, 2020.6.16)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발표 및 이의제기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5. 11. 28.(금) 11:00

○ 합격자 발표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휴대전화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자에 한함)

○ 이의제기 기간 : 합격자 발표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다. 면허증 교부신청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 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가운, 청진기, 펜라이트

※ 단, 응시자대기실에서 응시자 교육 후 각 시험장 이동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허용 합니다. 아울러, 시험 전 응시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고, 시험장 이동시간 이후 입장은 결시 처리합니다.

응시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지참 및 결시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응시기회 부여 등의 조치 결과를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자 및 사이클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라.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및 개인 휴대물품(손목시계, 장신구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때에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 중에는 별도의 메모용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실 내에 준비된 환자 상담용 메모용지는 각 시험실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험실 외부로 가지고 나갈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안내 후에도 퇴실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험을 ‘0점’ 처리합니다.

사.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시간(사이클) 중에는 시험장에서 퇴장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중 기기 오작동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해당 시험실 퇴실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체 시험이 종료되어 시험장을 퇴장한 후에는 합격자 발표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의료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차.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카.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함

타.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 실기시험센터 주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특히 실기시험센터에는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민·형사상 사법조치는 물론 「의료법」에 따라 합격무효 처리 및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습니다.

[마침]